

학생 포상 규정

제정 1994. 07. 25.
4차 개정 2022. 04. 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5.14)

제3조(포상종류)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이사장상,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 공로상, 우수상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4)

제4조(포상권자) 이사장상은 본 대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수여하고,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 공로상, 우수상은 총장이 수여하며,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은 각 단과대학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5.1.24)

제5조(결격사유) 제2조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이 있던 자는 제외한다.

제6조(이사장상) 본 상은 학칙 제2조의 단과대학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해당졸업생 중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 본 상은 각 단과대학 졸업생중 이사장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학과 학업성적우수상) 본 상은 각 학과에서 졸업예정자중 단과대학 학업성적 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공로상) ① 본 대학교 재학 중 학술연구나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또는 학생회 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졸업해당자에게 수여한다.

② 본 상의 추천은 각 학장 및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06.25., 2022.04.20)

제10조(우수상) 재학기간중 근면, 성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 1. 24)

제11조(포상방법) 이사장상,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 학과 학업성적우수상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상장을 졸업식장에서 수여한다.

제12조(부상) 전조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심사와 결정)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해당 단과대학 각 학과장으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수상자기록) 수상자는 소정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에 통보하여 기록하게 한다. (개정 2019.06.25., 2022.04.20)

제15조(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 포상자는 이 규정에 의해 포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 2005.1.24)

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